

목차

I.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II. 환경분쟁조정 현황
1. 환경분쟁의 발생	1. 환경분쟁사건 현황
2.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성	2. 環境紛爭 調整 實績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III.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제도의 발전
4.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향
5. 환경분쟁사건의 처리기관	1. 그 동안의 제도개선
6. 환경분쟁조정 유형	2. 앞으로의 발전방향

I.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1. 환경분쟁의 발생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산업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라 인간환경과 지구생태계의 환경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개인적인 건강상, 재산상 피해는 물론 사회 전체적인 환경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적으로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추구하던 1960년대 이후이다. '60년대지 '70년대의 환경분쟁은 대체적으로 공해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계몽적인 성격을 띠었다.'80

년대에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민주화가 부의 분배에 관심을 갖게하면서 환경분쟁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분쟁은 일반적으로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구제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분쟁은 그 성질과 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다.

첫째, 지역적인 광범위성을 띠게 되어 다수의 지역주민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이 대부분이다.

둘째,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한 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기 전단계에서 피해를 예상하여 그 대책 및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분쟁내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자연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관하여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복잡한 인과관계 때문에 과학기술적 지식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성

환경오염피해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며 오염현상은 재현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속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는 가해자의 무과실책임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는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판시하므로써 개연성설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므로써, 당사자들이 설사 관련 환경법을 준수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료공장 폐수로 인한 김양식 피해사건」에서 보듯이 환경오염 피해의 입증책임은 가해자가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므로써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료공장 폐수로 인한 김양식 피해사건〉

○사건번호 및 판결경위

- 마산지원 74가합 16호('76.8.30 판결)
 - 청구금액 : 227,460,000원
 - 판결결과 : 75,000,000원 인정(원·피고 항소)
- 대구고법 76나 937호('78.6.30 판결)
 - 판결결과 : 원고패소(원고상고)
- 대법원 78다 1653호('79.1.23 판결)
 - 판결결과 : 파기 환송
- 대구고법 79나 249호('81.1.29 판결)
 - 판결결과 : 원고청구 및 항소기각(원고상고)
- 대법원 81다 558호('84.6.12 판결)
 - 판결결과 : 파기 환송
- 대구고법 84나 919호('86.2.6 판결)
 - 판결결과 : 69,508,448원 인정

○당사자 인적사항

- 원 고 : 창원군→의창군
- 피 고 : 진해화학(주)

○ 당사자 주장

〈 원고주장 〉

- 피고회사는 '67년 9월 진해시 행암만 연안에 비료공장을 건설 가동 하여 오던중 동 공장으로부터 배출된 폐수에 의해 바다가 오염 되고 20km 떨어진 원고의 김양식장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청구금액을 배상하여야 함.
- 피해내용
 - 김의 유체가 이식 10일후부터 퇴색, 끝이 녹아 없어지거나 백색으로 퇴색하고 2차 싹도 나지 않음.
 - 성장과정상 암종병, 호산균 및 구균의 기생이 심하고 엽체가 쉽게 탈락되는 피해가 발생함.

〈 피고주장 〉

- 원고어장에는 피고공장의 폐수 뿐만 아니라 임해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도 유입되므로 원고어장의 수질오염이 곧 피고 공장의 폐수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 원고는 피고공장이 준공되고 2년후에야 비로소 김양식을 시작했는데, 이는 폐수로 인하여 흉작으로 될 것이 기정사실인 해역에 김을 양식하여 고의로 손해를 자초한 것임.
- 피고공장의 폐수가 조류에 따라 극히 희석된 채 이 사건 어장에 유입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런 정도의 폐수유입은 수인하여야 할 것임.

○ 판결이유

〈인과관계 인정〉

- 피고공장에서 폐수가 배출되는지 여부
 - 피고의 1일 총공업용수량은 약 13만톤이고 그중 약 8,500톤은 보충수로서 비료제조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되고 동폐수가 행암만으로 계속 배출되고 있음을 인정함.
- 폐수와 원고어장에의 도달 여부
 - 피고공장의 폐수가 혼합되어 있는 행암만의 해수는 바닷물의 유동에 따라 조석으로 왕복을 거듭하다가 복서풍 또는 서풍에 의해 높은 농도로서 원고어장에 도달됨을 인정함.
- 원고어장에 있어서의 폐수의 오염도
 - 피고공장의 폐수중에는 다량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었고 불소를 다량 발생시키는 다른 공장은 인근에 없었으며, 그 함유율이 자연상태는 1.0PPM이나 행암만은 지역에 따라 평균 2.7PPM으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 폐수가 김에 미치는 영향
 - 피해지역 폐수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본 결과 타 해수에 비해 김의 광합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결론
 - 풍향과 조류에 따른 이 사건 어장의 피해상황과 광합성 실험 결과로 미루어 보면 해수에 혼입된 피고공장의 폐수가 희석 되면서 조류 및 취송류(吹送流)에 따라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되어 김의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과실 및 위법성〉

- 피고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공해로 인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해배상을 해 온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폐수의 배출로 인한 위해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높고, 결과회피 의무가 무겁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위해방지 조치도 강구함이 없이 폐수를 그대로 배출 하였던 바, 피고는 최소한 위생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 또한, 그로 인하여 결국 원고가 양식하는 어장의 김을 퇴색 또는 고사케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공장의 위와 같은 폐수배출은 위법한 것임.

○ 재판내용의 특징

-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그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한계를 정함. 즉, 공해소송의 경우 기업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은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는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본건과 같은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인 엄밀한 증명의 부담을 원고에게 준다는 것은 공해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것임.
- 또한,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하고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으며, 원인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있어 오염물질 배출이 피해지역에 도달,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가해자가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임.
- 요컨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 현

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단인 것이다.

- 본건에 대한 원고측 입증한계
 -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 그 폐수중의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도달되었고
 -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 존재 추정함.
- 본 건에 대한 피고측 입증한계
 - 피고공장 폐수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면 그 불이익을 피고에게 돌려야 함.
- 본 건은 김양식 피해 발생시부터 소송 완료시까지 약 17년의 장기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차에 걸쳐 파기환송되었음.
(피해발생시기 : '69, '70년, 소송제기 : '74년, 소송완료 : '86년)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환경오염피해는 그 원인과 내용이 복잡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원처리방식이나 개인적인 접촉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제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공평타당성을 취하고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 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손쉽게 구제해 주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제도와는 다르다.

4.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

우리 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부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29조 및 제30조). 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환경분쟁조정제도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시행 연혁을 살펴보면

- '90.8.1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정(법률제4258호)
- '91.5. 18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제 제정
- '91.7. 19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족
- '95. 12. 29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1차개정(법률제5097호)
- '97.8. 28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 개정(법률제5393호)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종의 공적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라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분쟁을 소송외적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과거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의 구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기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의 제익과 환경이익의 調整(coordination)에 이르기까지 분쟁처리의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5. 환경분쟁사건의 처리기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 등 환경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직권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의 조정과 다수인 관련 분쟁 등을 행하고 있으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알선·조정 등을 행한다.

중앙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는 사법제도와 같은 상급심과 하급심의 관계가 아니고, 행정감독 관계도 아닌 상호 독립적이며 대등한 관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지방위원회에서 조정(調停)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재조정(調停)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분쟁조정기구를 중앙과 지방에 두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환경분쟁사건처리기관 및 주요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에 공해등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총리부의 외국으로 설치된 행정위원회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며 위원장 및 6인의 위원(3인은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 대신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전문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30인이내의 전문위원이 있으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공해분쟁의 알선·조정·중재·재정 및 공업·채석업·광업·모래 채취업과 일반공익의 조정업무와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린 분쟁등 지방자치체 상호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

지방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공해심사회를 둘 수 있으며, 공해심사회를 두지 않을 경우 공해심사위원을 9~15인 위촉하고 공해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앙의 경우 행정원 환경보호서에 공해분규 재결위원회 설치하고 주임위원 1인과 전임위원은 변호사나 사법관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7~11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서, 행정원 환경보호서 서장이 환경, 법률, 의학 또는 관련전문학식을 갖춘 공정한 인사를 선정하여 행정원에 서면요청하면 행정원에서 임명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지방정부의 조처나 재조처 불성립 건에 대한 재결과 재결된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하여 검토 요청을 하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성(시), 현(시) 정부에 공해분규조치위원회 설치하고 있는데, 주임위원은 각 성(시), 현(시), 정부의 수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9~15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서 성(시), 현(시) 정부의 수장이 관련기관

대표, 환경보호, 법률, 의학 및 사회공정인사 중에서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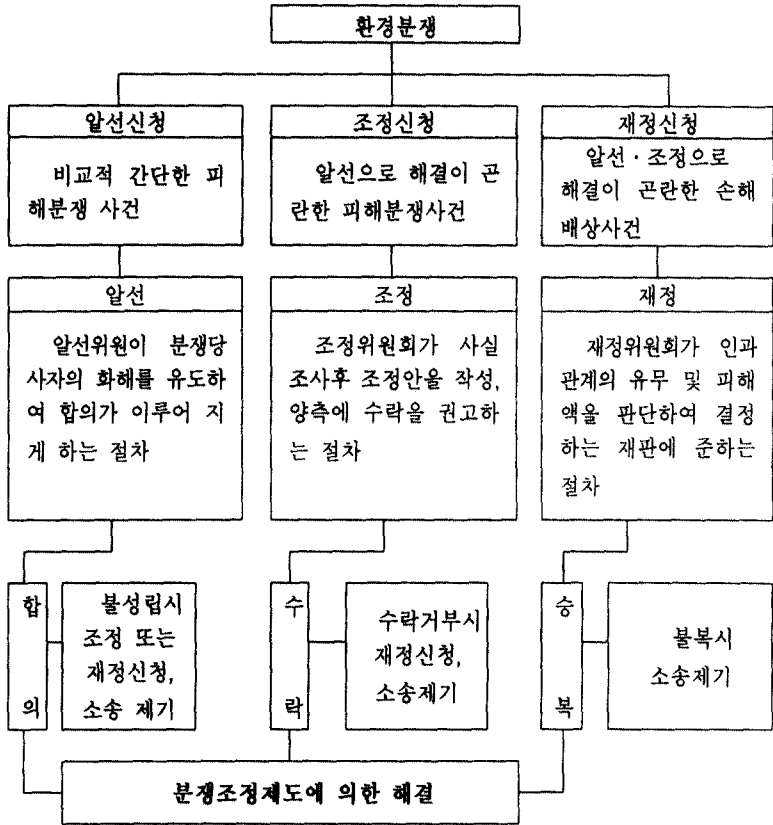
주요업무는 현 조처위원회의 조처후 조치서를 관할 법원에 심의 요청하고 조처의 불성립의 경우 성 조처위원회에 재조처 후 관할 법원에 심의 요청하는 것이다.

6. 환경분쟁조정 유형

환경분쟁조정 유형에는 알선·조정·재정 등이 있는데, 알선은 비교적 간단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은 알선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로서 양당사자가 수락하면 이는 당사자간의 조정 조서의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비하여 재정은 환경분쟁중 알선·조정이 곤란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손해액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환경분쟁조정절차의 흐름도〉



II. 환경분쟁조정 현황

1. 환경분쟁사건 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98년말 현재 총252건의 조정사건이 신청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1>에서 보듯이 '93년에 43건, '95년에 30건, '97년에 47건, '98년에는 62건의 조정사건이 신청되어 해마다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91~'92	'93	'94	'95	'96	'97	'98
신청	252	5	43	15	30	50	47	62
처리	216	4	31	20	26	37	44	54

조정사건을 오염원인별로 분석하면 전체 252건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73%, 대기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14%, 수질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10%, 해양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98년의 경우 신청사건 62건중 소음·진동분야가 56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도심지의 아파트 건설공사나 도로건설등 대규모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다른 피해와는 달리 오염발생과 동시에 인체감각으로 쉽게 느낄 수 있고, 다중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연도별 오염원인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	수질	해양
계(%)	252(100)	183(73)	36(14)	24(10)	9(3)
'91~'92	5	1	19(21)	3	-
'93	43	21(49)	2(13)	5(12)	8(18)
'94	15	10(67)	2(13)	3(20)	-
'95	30	18(60)	4(13)	7(24)	1(3)
'96	50	41(82)	7(13)	2(4)	-
'97	47	36(77)	9(19)	2(4)	-
'98	62	56(91)	4(6)	2(3)	-

접수된 조정사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하면 전체 252건중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한 분쟁이 53%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물피해 19%, 농산물피해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 피해, 정신적 피해, 축산물 피해로 인한 분쟁의 대부분은 각종 건설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이다.

〈표3〉 연도별 피해유형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구분	계	건축물 및 정신적	농산물	축산물	내륙 수산물	해양 수산물	기타 재산
계(%)	252(100)	133(53)	32(13)	47(19)	13(5)	11(4)	16(6)
'91~'92	5	2	1	1	1	-	-
'93	43	16	5	5	7	8	2
'94	15	5	3	5	1	-	1
'95	30	11	5	5	1	3	5

구분	계	건축물 및 정신적	농산물	축산물	내륙 수산물	해양 수산물	기타 재산
계(%)	252(100)	133(53)	32(13)	47(19)	13(5)	11(4)	16(6)
'96	50	36	6	5	-	-	3
'97	47	30	6	7	1	-	3
'98	62	33	6	19	2	-	2

조정신청사건의 지역별분포를 보면 총 252건중 서울지역이 76건으로 전체 분쟁발생건수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지역의 58건으로 23%로써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비율이 53%를 점하고 있다.

〈표4〉 연도별 발생지역별 현황(단위 : 건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52	76	9	3	18	4	58	9	16	18	15	11	5	9	1
'94이전	63	14	2	2	1	-	14	1	4	9	5	6	1	4	-
'95'	30	5	-	1	5	2	6	4	2	1	3	1	-	-	-
'96	50	20	4	-	1	1	13	2	3	1	3	1	1	-	-
'97	47	15	3	-	3	-	13	1	2	1	2	1	2	4	-
'98	62	22	-	-	8	1	12	1	5	6	2	2	1	1	1

2. 環境紛爭 調整 實績

'98년말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표에서 보듯이 총216건을 조정(調整)하였다.이중 재정사건은 전체의 91%인 197건이고 조정(調停)

사건은 9%인 19건이었다.위원회 조정결과를 당사자가 수용하여 승복한 사건은 전체의 216건중 160건으로 승복율이 74%이며, 해마다 승복율이 상승하여 '97년, '98년의 경우에는 각각 89%, 83%를 나타내고 있다.

〈표5〉 연도별 당사자 승복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92	'93	'94	'95	'96	'97	'98
계	216	4	31	20	26	37	44	54
승복(%)	160(71)	1(25)	15(48)	13(65)	21(81)	27(73)	28(86)	45(83)
불복(%)	56(29)	3(75)	16(52)	7(35)	5(19)	10(27)	6(14)	9(17)

Ⅲ.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1. 그 동안의 제도개선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종전에는 대부분 개별기업에 의하여 야기된 지역적인 환경오염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호소로 인한 것이었으나, 요즈음은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가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95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고조된 지역개발 열기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대규모 집단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개인 사업자간의 소규모 분쟁에 대한 사후적인 해결만이 가능하였고, 환경시설의 입지문제나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지역간의 집단분쟁 또는 자치단체간 분쟁에 대하여는 다루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5년 1차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직권조정 제도 및 선정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97. 8. 28.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기존에 조정대상이 아니었던 ①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되는 지반침하 ②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 ③모든 예상피해 ④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대폭 확대 개선 하였다.

또한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의 경우 환경단체가 주민을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표당사자에 의한 조정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알선은 3월 조정·재정은 9월로 사건처리기간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2. 앞으로의 발전방향

- ① 환경분쟁조정신청대상의 확대 및 예상피해배상제도 신설 등으로 신청건수가 양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배상액 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방법 및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도출되어야 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그동안 처리한 조정사건의 오염원인별 신청사건을 분석한 바, 근래 들어 도심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증가하면서 공사업체와 인근 주민들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에 따라 소음·진동 분야가 7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오염원인별 신청사건의 편중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이 검토 되어야 한다.

- ③ 분쟁조정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환경오염피해구제에 머무르지 말고 기업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배상 뿐만 아니라 공해 기업으로 인식되어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기업이 환경오염방지 기술을 육성·발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④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배상액이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 등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